

제28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9년 6월 19일(금)

심 사 보 고 서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6. 19.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4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6. 12.)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소방관서 신설 및 3교대 소방인력 확충을 위하여 소방직 증원과
기획·집행이 가능한 핵심실무인력 보강을 위하여 일부 직종의 직
급별 정원채정기준(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총 정원 조정 : 2,668명 → 2,781명(증113명)
- 소방직공무원 : 1,130명 → 1,243명(증113명)

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 일반직공무원 : 6급 +1%, 8·9급 △1%
- 기능직공무원 : 7급 +1%, 10급 △1%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연구관 +1%, 연구사 △1%

다. 직급별 정원조정

- 소방직공무원 : 증113명(소방령 4, 소방경 4, 소방위 15, 소방장 15, 소방교 36, 소방사 39)
- 연구직공무원 :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이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에 따른 소방직 113명을 증원하고 정원동결 상황에서 6급이하 공무원의 직급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소방공무원 정원이 1,130명에서 1,243명으로 113명이 증가하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2,668명에서 2,78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09년도 총액인건비 소요액이 1,701억원에서 1,736억원으로 35억원이 증가하지만 이는 행정안전부 총액 인건비 기준액 1,772억원 이내 임.

소방직 113명의 인력운영으로는 덕산 119안전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증원 17명과 소방행정수요 증가 및 전면적인 3교대 실시계획에 따른 96명이 현장 활동 인력으로 배치될 예정임.

따라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현장 활동 능력 저하 등은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인력의 3교대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정원동결 상황에서 총 정원의 변동 없이 핵심실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를 재조정함에 따라 일반직 7급 10년 이상, 기능직 8급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적체 해소와 승진기회를 제공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한도에 부합하고 자치 단체장의 자율성과 탄력성 있는 인력운용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음.

앞으로, 핵심실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6급 이하 직급별 분포 조정 시 행정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며, 인력 운용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개정 후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기 바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2,668명”을 “2,781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130명”을 “1,243명”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7%이내	21%이내	35%이내	35%이내	2%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5%이내	13%이내	19%이내	32%이내	31%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이내	84%이상	26%이내	74%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6%이내	8%이내	14%이내	31%이내	37%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이내	20%이내	48%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2,781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51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59	42	7	4	6
5급이하소계	982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20			
연 구 직 계	136	-			
연 구 관	21			18	3
연 구 사	115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243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233	-			
교육공무원계	42	-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63	-			

※ 연구관, 지도관, 교수 등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668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6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1,130명</u>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70명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81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6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1,243명</u>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70명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